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90
----------	-----

제출연월일 : 2009. 6. 8.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전광역시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제공하고 능력과 책임에 기초한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내지 제5조).
- 나. 대전광역시 학자금이자지원심의회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 다. 학자금 이자지원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2010년 예산편성 예정
- 다. 합 의 : 예산담당관 합의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2009. 5. 8. ~ 5. 28. / 접수 의견 1건(반영 1건, 별첨)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전광역시 대학생에게 학자금 이자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대전광역시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전광역시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전광역시 대학생”이란 대전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인 학생 또는 지원신청기준일부터 1년 이상 대전광역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의 자녀로 대전광역시외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②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학자금 이자지원) ①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자금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이자지원 조건·금액·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제6조의 대전광역시 학자금 이자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5조(이자지원 순위) 시장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전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인 학생
2. 지원신청기준일부터 1년 이상 대전광역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의 자녀로 대전광역시외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제6조(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학자금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 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장학재단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추천 하는 자
3. 교육 또는 장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자
4. 시민단체 대표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교육담당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조례제정 주민발의 대전운동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 ▪ 제6조(구성) 대전광역시 학자금이자지원 심의위원회구성에 있어 대전지역의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추가 삽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 전국적 추세이고 학자금을 부담하는 당사자로서 학부모들의 의견도 필요함

관 계 법 령 발 취

교육기본법

[시행 2008. 6.22] [법률 제8915호, 2008. 3.21, 일부개정]

제28조 (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 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 개정 2007.12.2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0.2] [법률 제9617호, 2009.4.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맞춤형 학자금 지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학자금 지원"이란 대학생의 학업성과 전공분야,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유형 및 대학생·학부모의 가계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다.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3.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제31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학자금 지원 대상)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31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대학생이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기금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각종위원회 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 (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37호><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2조(적용)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1983. 12. 31 조례 제1328호><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37호>

제3조(일비)①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 03. 07 조례 제2636호><개정 2002. 05. 24 조례 제3108호>

[본조전문개정 1989. 01. 01 조례 제1737호]

제4조(여비)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 심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년 6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6월 8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9년 6월 9일
3. 상 정 일 자 :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9. 6. 26)
상정, 심사,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장시성)

1. 제안이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전광역시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제공하고 능력과 책임에 기초한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부터 제5조).
- 나. 대전광역시 학자금이자지원심의회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다. 학자금 이자지원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정함(안 제14조).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박춘용)

○ 본 제정 조례 안은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과 관련 이자를 지원함에 있어 정부지원이외 대전광역시 대학생들에게 지역차원의 지원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문 14조와 부칙으로 축조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 등 정의를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수립과 이자지원 사항을 제6조부터 제13조에서는 학자금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제14조에서는 학자금 이자지원 사무의 위탁근거를,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2010년 7월 1일부터로 명시하고 있음.

○ 본 조례 안 검토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재정부담을 덜어 균등한 고등 교육기회제공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기획재정부에서 올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를 7.3%에서 5% 후반으로 낮추는 등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장학제도 및 이자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별 조례제정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으로 인해 정부지원이 소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자치단체 간 협조체계 구축과 정부역할에 대한 정확한 의사전달 등 적극

적인 정부지원을 촉구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VII. **수 정 내 역** : 내용별첨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490
----------	-----

제안연월일 : 2009. 6. 26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지역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 이자지원 수혜가 우선하도록 하고 위원장 호선 등 일부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대학생의 정의를 대전광역시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과 대전광역시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이외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안 제5조제2호).

나. 약칭 중복사용 조문을 정비함. (안 제5조제1호).

다. 대전광역시 학자금 이자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전광역시 대학생”이란 대전광역시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인 학생 또는 대전광역시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이외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안 제5조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전광역시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2. 대전광역시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외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3. 대전광역시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①(생략)</p> <p>1. (생략)</p> <p>2. “대전광역시 대학생”이란 대전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인 학생 또는 지원신청기준일부터 1년 이상 대전광역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의 자녀로 대전광역시외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p> <p>② (생략)</p> <p>제5조(이자지원 순위) (생략).</p> <p>1. 대전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인 학생</p> <p>2. 지원신청기준일부터 1년 이상 대전광역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의 자녀로 대전광역시외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p> <p>제7조(구성) ① (생략)</p> <p>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생략)</p>	<p>제2조(정의) ①(제정안과 같음)</p> <p>1. (제정안과 같음)</p> <p>2. “대전광역시 대학생”이란 대전광역시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인 학생 또는 대전광역시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이외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5조(이자지원 순위) (제정안과 같음).</p> <p>1. 대전광역시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p> <p>2. 대전광역시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외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p> <p>3. 대전광역시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p> <p>제7조(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제정안과 같음)</p>